제276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2.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년 12월 3일
전문위원 서 선 옥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20 - 126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0년 11월 10일

라. 회부일자: 2020년 11월 18일

2. 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0.7.2.)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및 우리구 중·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제정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강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안 제3조)

○ 상품권의 유통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외의 서울시 지역으로 할 수 있음

○ 상품권의 유효기간: 5년

○ 상품권의 권면금액: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다. 판매대행점·운영대행사의 협약 등(안 제4조)

○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는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마. 강서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비율 규정(안 제7조)

○ 강서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사업 및 지원(안 제8조)

○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

○ 구청장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음

사. 강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정책(안 제9조)

○ 상품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및 축제, 홍보, 마케팅 활동 등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10.8.~10.28.)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3조에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와의 협약 시 구 홈페이지

에 공개하도록 하고 판매량, 제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안 제7조에서 상품권 잔액의 환급비율을 100분의 80 으로 규정하고,
- 안 제8조에서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구청장은 상품권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으며,
- 안 제9조에서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행사 및 축제, 홍보, 마케팅 활동 등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서울강서사랑상품권[1]"**을 발행하여 **제로페이[2]**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음

※ 2020년도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현황

(단위:건, 백만원)

일자	발행규모	판매건수
4/1(수)~4/8(수)	5,000	13,371
7/16(목)~8/3(월)	7,000	16,115
10/26(월)	4,500	9,735
합 계	16,500	39,221

1)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은 강서구에서 발행하는 모바일 지역상품권을 통칭하는 말로 비플 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 결제 앱을 설치하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말한다.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비 활성화를 이끌기 위하여 모바일 지역상품권이라 할 수 있는 “강서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적, 입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에 대한 5% 시비 보조와는 별도로 매년 6억원의 구비 예산이 소요[3]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 만큼, 상품권 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검토 및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매년 300억원 규모의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할인보전금 7%에 대해 시비보조금 5%를 제외하고 2% 구비부담 (300억 × 2% = 6억)

참고 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